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7
----------	-----

2011년 2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1년 2월 8일
-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 2월 22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서강석)

가. 제안 이유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전자민원으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학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가. 수수료 감면 대상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전자민원으로 발급하는 제증명(16종)”을 추가함.(안 제6조)
-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의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중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 등 조정.(안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및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0. 11. 25. ~ 12. 15.)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용훈)

가.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 6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9.(생략) <div style="text-align: right;"><신 설></div>	제 6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9.(생략)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는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제증명서에 대해 수수료(16종, 각 600원)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립학교의 경우 전자민원으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이 개정(2010년 11월 1일)된 바, 시립대와 국립학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립대 제증명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 위한 개정안임.

○ 시립대의 현재 제증명 수수료는 발급유형과 관계없이 각 600원(교육비납입증명서는 무료)인 바, 2009년 제증명 발급전체건수가 모두 전자민원 형식으로 발급될 경우 연간 약2천5백만원에 상당하는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됨.

※ 2009년 제증명 발급건수 및 예상 세수변동

- 09년 전자민원 제증명 발급건수 : 17,596건
- 09년 전자민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 10,557,600원(= 600원 × 17,596건)
- 09년 제증명 발급 전체 건수 : 41,789건
 - 전자민원이 전체민원의 50%로 증가할 경우는 12,536,700원 감소예상.
 - 600원×(09년 제증명 발급 전체건수) × 50% = 12,536,700원

- 시립대의 제증명 수수료 전액면제 방침은 2010년도 중앙정부의 민원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국무총리지시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면제 조치를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안 제6조의 조명(條名)이 '수수료의 감면'으로 되어 있으나, 안 제6조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명을 '수수료의 면제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또한, 제10호의 상위법령 인용규정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있으나, 제2항의 단서규정에 전자민원창구 미설치시 제3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의 규정만으로도 전자민원에 의한 수수료 감면의 근거규정으로서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2항에 추가하여 제3항을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관련 규정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제4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수수료 조정(안 제3조의 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1. 공통수수료					1. 공통수수료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 액	비고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 액	비고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화재증명		1건	1,000원		(가) 화재증명		1건	800원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3,000원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2. 분야별 수수료					2. 분야별 수수료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 액	비고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 액	비고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3종)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3종)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사. 승강기보수업 등록(3종)					사. 승강기보수업 등록(3종)				
(3)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1건	20,000원		(3)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1건	4,000원	

-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1)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전국통일수수료징수규정')」이 개정(10.9.17)되어 추가로 12종의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 통일 적용 징수기준을 적용하게 된 바, 이 중 서울시와 관련되는 네 가지 수수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임.

▶ 개정대상 수수료 및 세수 감소예상분

구 분	내 용
개정 대상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수수료(3,000원 → 800원) ·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1,000원 → 800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2,000원 → 800원)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20,000원 → 4,000원)
수수료 감소 예상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감소예상금액: 5,524,000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981건 × 감소금액(2,200원) = 2,158,200원 ·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2,492건 × 감소금액(200원) = 498,400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363건 × 감소금액(1,200원) = 2,835,600원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2건 × 감소금액(16,000원) = 32,000원

- 「전국통일수수료징수규정」 부칙규정에 의해 개정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바, 15개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11.2.9 기준)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4개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개정 과정 중에 있음.
- 집행부는 「전국통일수수료징수규정」의 개정사항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이라는 점과 감면대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세입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

-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해 주민이 부담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행정력,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실태 등 각종 행정여건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용도 및 부담능력,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치적으로 수수료율 수준을 책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수수료율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것은 지방자치사무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외조항(「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단서)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1)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본 개정안이 법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 협의 없이 단순히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별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중앙정부의 간섭적 행태가 불필요하게 반복·시행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론 요지 : 없 음

7. 수정안의요지

가. 수정이유

동 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 조항의 명칭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6조 조항 중 “감면”을 “면제”로 수정함.(안 제6조)

○ 안 제6조 제10호의 준용규정을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10호)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17 관련
----------	-----------

제안년월일 : 2011년 2월 25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동 개정조례안 중 안제6조 조항의 명칭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6조 조항 중 “감면”을 “면제”로 수정함.(안 제6조)

나. 안 제6조 제10호의 준용규정을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및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조명 중 “감면”을 “면제”로 한다.

안 제6조 제10호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6조(수수료의 <u>감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치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p>제6조(수수료의 <u>감면</u>)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현행과 같음)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치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p>제6조(수수료의 <u>면제</u>)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8. (개정안과 같음)

9. (개정안과 같음)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p> <p>1. 공통수수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수수료징수 대상사무</th> <th style="width: 10%;">단 위</th> <th style="width: 15%;">금 액</th> <th style="width: 1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d></td> </tr> <tr> <td>(가) 화재증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원</td> <td></td> </tr> <tr> <td>(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원</td> <td></td> </tr> </tbody> </table> <p>2. 분야별 수수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수수료징수 대상사무</th> <th style="width: 10%;">단 위</th> <th style="width: 15%;">금 액</th> <th style="width: 1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3종)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원</td> <td></td> </tr> <tr> <td>사. 승강기보수업 등록(3종) (3)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원</td> <td></td> </tr> </tbody> </table>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비 고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화재증명	1건	1,000원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3,0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비 고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3종)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사. 승강기보수업 등록(3종) (3)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1건	20,000원		<p>[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p> <p>1. 공통수수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수수료징수 대상사무</th> <th style="width: 10%;">단 위</th> <th style="width: 15%;">금 액</th> <th style="width: 1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d></td> </tr> <tr> <td>(가) 화재증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800원</td> <td></td> </tr> <tr> <td>(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800원</td> <td></td> </tr> </tbody> </table> <p>2. 분야별 수수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수수료징수 대상사무</th> <th style="width: 10%;">단 위</th> <th style="width: 15%;">금 액</th> <th style="width: 1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3종)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800원</td> <td></td> </tr> <tr> <td>사. 승강기보수업 등록(3종) (3)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4,000원</td> <td></td> </tr> </tbody> </table>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비 고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화재증명	1건	800원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비 고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3종)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사. 승강기보수업 등록(3종) (3)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1건	4,000원		<p>[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p> <p>1. 공통수수료 (개정안과 같음)</p> <p>2. 분야별 수수료 (개정안과 같음)</p>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비 고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화재증명	1건	1,000원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3,0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비 고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3종)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사. 승강기보수업 등록(3종) (3)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1건	20,0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비 고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화재증명	1건	800원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비 고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3종)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사. 승강기보수업 등록(3종) (3)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1건	4,000원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조명 중 “감면”을 “면제”로 한다.

제6조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별표 중 1. 공통수수료의 (가) 화재증명란 중 금액 “1,000원”을 “800원”으로,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란 중 금액 “3,000원”을 “800원”으로 하고, 2. 분야별 수수료의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란 중 금액 “2,000원”을 “800원”으로, (3)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란 중 금액 “20,000원”을 “4,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수수료의 <u>값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6조(수수료의 <u>면제</u>)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현행과 같음)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1. 공통수수료					1. 공통수수료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수료징수 대상사무</th> <th>단위</th> <th>금 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td> </tr> <tr> <td colspan="4">(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td> </tr> <tr> <td>(가) 화재증명</td> <td>1건</td> <td><u>1,000원</u></td> <td></td> </tr> <tr> <td>(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td> <td>1건</td> <td><u>3,000원</u></td> <td></td> </tr> </tbody> </table>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 액	비고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화재증명	1건	<u>1,000원</u>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u>3,000원</u>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수료징수 대상사무</th> <th>단위</th> <th>금 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td> </tr> <tr> <td colspan="4">(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td> </tr> <tr> <td>(가) 화재증명</td> <td>1건</td> <td><u>800원</u></td> <td></td> </tr> <tr> <td>(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td> <td>1건</td> <td><u>800원</u></td> <td></td> </tr> </tbody> </table>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 액	비고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화재증명	1건	<u>800원</u>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u>800원</u>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 액	비고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화재증명	1건	<u>1,000원</u>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u>3,000원</u>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 액	비고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화재증명	1건	<u>800원</u>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u>800원</u>																																															
2. 분야별 수수료					2. 분야별 수수료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수료징수 대상사무</th> <th>단위</th> <th>금 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3종)</td> </tr> <tr> <td>(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td> <td>1건</td> <td><u>2,000원</u></td> <td></td> </tr> <tr> <td colspan="4">사. 승강기보수업 등록(3종)</td> </tr> <tr> <td>(3)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td> <td>1건</td> <td><u>20,000원</u></td> <td></td> </tr> </tbody> </table>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 액	비고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3종)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u>2,000원</u>		사. 승강기보수업 등록(3종)				(3)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1건	<u>20,000원</u>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수료징수 대상사무</th> <th>단위</th> <th>금 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3종)</td> </tr> <tr> <td>(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td> <td>1건</td> <td><u>800원</u></td> <td></td> </tr> <tr> <td colspan="4">사. 승강기보수업 등록(3종)</td> </tr> <tr> <td>(3)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td> <td>1건</td> <td><u>4,000원</u></td> <td></td> </tr> </tbody> </table>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 액	비고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3종)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u>800원</u>		사. 승강기보수업 등록(3종)				(3)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1건	<u>4,000원</u>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 액	비고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3종)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u>2,000원</u>																																															
사. 승강기보수업 등록(3종)																																																	
(3)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1건	<u>20,000원</u>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 액	비고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3종)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u>800원</u>																																															
사. 승강기보수업 등록(3종)																																																	
(3)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1건	<u>4,000원</u>																																															